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제2차 소모임

2021. 6. 17.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제2차 소모임

- 일시: 2021년 6월 17일 (목) 오후 1시~3시
- 장소: 한국안전경제교육연구원

1. 2차 소모임 시사점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2. 안전보건공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터넷 교육 운영 현황

신용학 차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교육기획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의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방안

박정숙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사업본부장)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택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방안

신현주 (대한산업안전협회 본부장)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여태동 (CJ대한통운 전국택배대리점연합 재무국장)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상 문제점

권혁정 (CJ대한통운 전국택배대리점연합 노무팀장)

7. 토론 내용 정리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제2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소모임 포럼 참석자

소속	성함	직함
성균관대학교	전용일	경제학과 교수 (방재안전협동과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용학	교육기획부 차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명준	정책연구부장
대한산업보건협회	박정숙	교육본부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신현주	경기지역 본부장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권혁정	노무팀장
	여태동	재무국장
롯데택배대리점연합	오염석	상임부회장
	김정기	사무국장
한진택배대리점연합	고대권	사무국장

택배기사 안전보건교육 2차 소모임 시사점

작성: 전용일교수 (성대 경제학과)

택배기사 교육 현황

- 특고의 산업재해는 퀵서비스, 건설기계운전자, 택배기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 택배기사가 산안교육을 업무구조상 받기도 어렵고 대부분 받은 적이 거의 없음.
- 현재로는 대리점에서 산안교육이 실시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임. 장소, 교재, 강사 등 거의 모든 상황이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향후에도 택배기사에 대한 산안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인터넷 원격교육은 잘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원격교육이 가지는 교육효과의 한계가 있고 법적인 소개에 머무르고 있음. 특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현장적용과 효과에는 한계가 발생함.
- 배치전에 교육이 실시되어 산재예방으로 실효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함.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2021년 7월 21일)

- 영업대리점에서 택배기사에게 안전보건교육을 교육시킬 의무가 발생함.
- 현장에서 교육시키려고 해도 방법이나 내용 부재 등 인프라 구축 부족.
-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를 내리지만, 그들도 택배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항을 고용노동부 본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임

- 대리업주가 고민하는 산업교육 내용을 관련자와 공유할 필요가 있음
- 교육커리큘럼을 만들고 강사를 육성 필요. 대리점주가 3년의 경험만으로 교육실시가 어렵고, 실제로 어떠한 교육을 구성하고 강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시

교육대상자 추정

- 산안법 상 택배원 교육대상자는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택배업에 들어온 택배기사(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택배기사는 5만명. 신규자로 현재 교육대상을 1만명.
- 신규자 연간 4000명-5000명.
- 퇴출자 연간 5000명
- 다른 회사로 이전자 연간 2000명.
- 택배기사는 생애 최소 한번이상 산안교육 필요함.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을 업무시작전에 반드시 받아야 함
- 택배기사 업무를 시작하고 1-2달내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음. 산안교육의 부담 주체를 사업주로 하여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제공할지에 대한 논의
- 택배기사의 업무숙지는 6개월이면 가능함. 업무개시전 강화된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지속적으로 보수(정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함
- 택배기사는 업무 시작전 최초노무제공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교육확인증)을 발급받고 택배사업에 진입하는 절차 필요

교육방법

- 안전보건교육의 목표 -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군으로 육성
-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교육은 모든 화물업체 종사자가 모여서 운전관련 교육만 진행
- 최초 노무제공시 기초교육 2시간은 온라인으로 가능

-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실시해야 함. 특별안전교육은 적용제외가 없어서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모두 실시해야 함. 16시간의 구성은 2일 교육실시 대신 현재는 4시간을 미리 진행하고 12시간을 추후에 진행함.
- 집체교육의 어려움 - 전국적으로 교육시설을 가진 단체를 활용
- 안전보건공단은 택배기사의 특고성으로 인해 인터넷교육으로 방향을 설정.
-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야지만 교육이수를 미리하게 되면 종사자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택배기사의 특화된 교육내용. 현장적용도가 높은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함. 건강관리내용, 엘리베이터 사용시 주의사항, 계단이용 시 주의사항 등 작업안전사항, 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질환·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등
- 택배기사가 필요할 때마다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함.

교육 시범실시기관

- 택배기사를 교육시킬 교육기관이 부재함.
- (가칭) 대리점주연합회,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연합회와 전문 교육기관이 협업
- 교육비의 현실화. 근무시간의 교육지원. 교육실시기간에 대한 동기부여 (대리점주연합회와 협약하면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용이해짐)

대리점주(교육강사)와 일용직 교육

- 관리자나 대리점주에게도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작업 위험 예방과 보건 조치 점검할 능력배양
- 물류현장에서 이직이 많은 일용직근로자의 산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유사하게 택배기사에게 특

화된 안전보건기초과정을 만들어야 함.

3차 소모임 예정

- 7월 8일 (목요일) 오후 1시 - 고용노동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회의 날짜 변경가능
- 택배기사 안전보건교육의 커리큘럼,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 예정
- 쟁점사항: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대리점주 아니면 택배사인지를 결정해야 함. 택배기사 특고의 쟁점사항임

안전보건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터넷 교육 운영 현황

산안법 전부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시행('20.1.16.)

□ 중소 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해 특고 인터넷 원격교육 추진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561, '19.6.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인터넷 원격교육 시행

○ (교육시행) 공단 교육원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한 무료 교육지원('20.1.2.~)

○ (교육과정) 93종 개설(교육시간별 3종, 업종별 31종)

* 택배기사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시간별 3종 개설

○ (지원교육 종류) 최초 노무제공시(2H), 단기간·간헐적 작업(1H)

*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경우 50% 면제

○ (수료기준) 시험점수 60점 이상(이수증 발급: 교육일시·직종·교육시간 명시)

□ 사업장 자체 교육,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보건 콘텐츠를 제공('20.1.4.~)

○ 택배 관련 안전보건 콘텐츠 18종 제공(교안, 책자, 동영상, OPL 등)

○ 특고교육 시행 따른 민간교육기관(112개소) 참여 안내('19.12, 간담회 2회)

□ 동일과정 반복 수강 방지를 위한 직종 공통 교육과정(10종) 추가 개설('20.3월)

□ 인터넷 원격교육 시스템 고도화('20.12월)

○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바스켓 방식*으로 변경, 교육 중복 수강문제 해결

* 바스켓방식 : 교육시간에 맞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과정 구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러닝 실적

○ '20년 약 8만명 교육 이수(택배기사의 경우 약 1.3만명 교육 이수)

소계	건설기계운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80,252	56,901	7,438	12,868	2,782	263

○ '21년 택배기사 교육 수강자 2,499명, 이수자 2,198명('21년 5월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의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방안

박정숙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사업본부장)

[주요 개선 방안]

- 안전보건교육 운영체계 : 교육 시간의 현실화, 교육 대상의 확대, 교육 과정 개발
- 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작동성 강화 : 유인체계, 홍보 강화, 인센티브, 인프라 확충

1. 택배원의 안전보건교육 현황

□ 법적 근거

법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시행령제67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보집인(전업),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 쿠팡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업무

※ 건설기계 :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캐이퍼, 덤프트럭, 기증기, 모터 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벙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향타 및 향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 교육방법

-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교육기관에 따라 온라인으로 4시간 혹은 5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교육의 종류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2시간)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2시간)은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보다 내용에 있어서 4개 사항이 더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 시간은 오히려 1/4 수준임

→ 현실적인 시간 조정과 내용 구성의 적용이 필요함

2)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 이상)

- 공통내용은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 준함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에 모두 해당함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8시간 이상) : 특별교육의 공통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택배원에 해당되는 작업 중심)

작업명	교육내용
13. 운반용 등 하역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 교육실시 현황

1)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가. 택배업종사자 최초노무교육 및 특별교육(무료)

- 콘텐츠 구성(16회차) : 필수 2회차, 옵션 14회차

- (필수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택배업종사자
- (필수2) (특고) 택배업 배송작업안전
- 재해종류별 응급처치요령 / 재해발생 시 응급구호체계 구축 및 관리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보호구
- 작업장 소음 관리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 감염매개별 작업안전수칙
- 근골격계질환의 이해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 안전
-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진동작업의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와 활용
- 일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학습 콘텐츠 구성

*인정시간

필수여부	차수	학습목차	선택
필수1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택배업 종사자	1회차필수
옵션	3	재해종류별 응급처치요령	선택하기
옵션	4	재해발생 시 응급구호체계 구축 및 관리	선택하기
옵션	5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선택하기
옵션	6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보호구	선택하기
옵션	7	작업장 소음 관리대책	선택하기
옵션	8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선택하기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강의 구성 화면

인정시간설명

▶ 30분 교육

- 교육대상 : 해당 분야에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자가 간헐적 작업 또는 단기간 작업을 할 경우
- 콘텐츠 : 필수 콘텐츠 1개 + 옵션 콘텐츠 1개

▶ 1시간 교육

- 교육대상 : 해당 분야에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간헐적 작업 또는 단기간 작업을 할 경우
- 콘텐츠 : 필수 콘텐츠 1개 + 옵션 콘텐츠 2개

▶ 2시간 교육

- 교육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콘텐츠 : 필수 콘텐츠 1개 + 옵션 콘텐츠 4개

※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선택한 인정시간에 따라 콘텐츠의 선택 갯수가 정해집니다.

안전보건공단의 택배업종사자 인터넷 교육 인정시간 안내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교육 및 특별교육_지게차(16회차)

- 필수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지게차
- 필수2 특고_지게차 작업안전 II
- 옵션은 동일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1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교육 및 특별교육_지게차

수강신청

찾보기

이전 페이지

· 수강료	0원	· 수강 신청기간	2021.01.01 ~ 2021.12.31
· 학습기간	2021.01.01 ~ 2021.12.31	· 담당경사	김덕운
· 차시	16차시	· 정원	7225명 / 100000명

2) 자체 실시 현황 (협동조합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 사례)

- 교재 자체 제작 (500쪽 분량) : 택배SM특별안전보건교육 자료집
- 콘텐츠

- 신규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 (58쪽 분량)
- 택배안전보건교육 (82쪽 분량)
- 택배SM 특별안전보건교육 (268쪽 분량)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 안전 (10쪽 분량)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가이드(2019) (20쪽 분량)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Excel 프로그램 사용안내 (14쪽 분량)
-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10쪽 분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 : 택배업 종사자 (8쪽 분량)
- 화물자동차 작업계획서 (16쪽 분량)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안내 (12쪽 분량)

- 교육 후 업무적용도가 떨어진다는 반응과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분량이 많고 내용이 방대하여 법적인 내용을 소화하기에는 교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임
- 교육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음

3) 교육기관 실시 현황

- 특고 민간위탁 교육(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교육과정을 개설중인 기관이 거의 없음
- 특고 민간위탁교육(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또한 요양보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한국커서비스사업자협회 등 관련 협회나 단체가 주관하여 업무 투입 전 필수교육의 이수와 함께 실시하지 않으면 교육생 모집이 어려움

2. 현행 택배원의 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 교육 운영 시스템 강화

- 1) 적정 교육 시간 배정과 교육시간 단축이나 면제 조항 신중히 적용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비해 교육 시간이 부족하며 채용 시 교육시간(8시간 이상)에 준하는 교육 시간 배정이 필요함

- 해당 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교육 이수의 경험이 없으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야 함

2) 교육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 택배원뿐 아니라 관리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는 대리점주와 관리직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관련 위험 요인과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지식을 공유

3) 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에 대한 지원

-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과정과 같은 집체교육에 대한 개발 지원 필요
- 교육생 확보의 어려움이나 과정 운영에 대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교육기관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많음
- 전문가 풀 구축하여 개발 지원 강화

4) 현업 적용도가 높은 과정 개발로 만족도 향상

- 관련 연구 결과와 현장 실태 파악을 토대로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

□ 현장 작동성 강화

1) 교육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

- 교육비 지원의 현실화 등 대안이 있어야 함(시간이 곧 수입인 상황에서 교육을 위한 시간 할애에 대한 이해 절대 부족)
-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면 참여도를 높이기 어려움

2) 과정운영을 하는 민간교육기관에 인센티브

- 집체 교육 과정을 운영할 경우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교육생 확보 체계 구축
- 교육비 지원 등 수수료 체계 현실화

3) 교육 지원 시설 확충

- 이동성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생의 접근을 높일 수 있는 곳에 교육장 개설할 수 있게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택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방안

신현주 (대한산업안전협회 본부장)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발생 현황

◇ 최근 4년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현황

(단위: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계	586	815	1,445	1,556
사고	579	772	1,366	1,479
질병	7	11	21	19
출퇴근	-	32	58	58

◇ 최근 4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현황

(단위: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계	586	815	1,445	1,556
퀵서비스	411	594	1,105	1,249
건설기계운전자	78	86	157	132
택배기사	51	70	119	100
보험설계사	17	30	35	27
방문강사	21	22	23	17
골프장 캐디	7	8	14	12
대출모집인	1	-	2	-
신용카드모집인	-	2	1	2
대리운전기사	-	-	2	-
방문판매원	-	-	-	6
방문점검원	-	-	-	6
가전제품설치원	-	-	-	1
화물차주	-	-	-	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산재현황을 보면 산재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재해가 사고성 재해이며,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가 퀵서비스, 건설기계운전자, 택배기사에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온라인 및 배송문화의 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영향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택배기사의 경우도 매년 30%이상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6년 ~ 2020년 8월 택배근로자 산재현황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8월
계	31	51	70	119	100
사고	28	48	63	98	86
질병	5	3	7	21	14

- 최근 5년간의 택배근로자의 산재현황은 보면 사고성 재해는 2017년부터 매년 약 50%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질병도 2018년부터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2. 택배종사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 택배기사의 최초 노무제공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의 적절성 여부

- 업무시작전 실시하는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2시간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업종과 비교하였을 때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업종별 채용시 교육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이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2시간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업종별 채용시 안전교육(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은 크게 3가지로 대상을 구분할 수 있음.
 - 채용시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따라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개별사업주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일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업종별로 제정하고 있는 채용시 교육내용을 고려할 때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산안법에서 규정한 시간내에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채용시 교육 : 10개 항목(8시간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일용직) : 4개 항목(4시간이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 14개 항목(2시간이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8시간이상, 교육내용은 10개 항목인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은 2시간이상, 14개 항목을 실시해야 함.
- 단서조항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시간은 교육의 효과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의 검토가 필요함.

◇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내용(10과목)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28조제1항 관련)

구 분	교육 내용(4과목)	시간
공 통	1.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2.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3.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4.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교육내용(14과목)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9.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10.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11.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3.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14.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택배기사의 최초 노무 제공시 안전보건교육의 시행 여부

○ 택배기사의 근무실태 분석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출처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8)

- 택배종사자 1,9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대기업 5개사)

○ 안전교육을 받은적이 있는지 여부

- 안전교육 받은적 없다 17%,
- 입사시만 안전교육을 받았다 17%,
-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66% 받음

- 입고된 택배가 분류작업이 완료되면 상차후 택배배송을 하기전 관리자가 TBM으로 스탠딩 방식의 업무전달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주로 교육내용은 교통안전이 대부분을 차지함. 설문조사에서는 66%가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법에서 정한 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한 시간과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실정임.

-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은 83%가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택배배송을 수행하는 실정이고, 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택배사나 영업점에서 권유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수하는 경향이 많음.

- 택배사나 영업점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장, 시설, 장비, 강사 등의 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되어 있지 않고 업무특성상 집합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택배종사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택배의 배달횟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라서 택배종사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형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어려운 구조임.

- 안전교육은 택배회사 관리자, 영업점주가 담당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자 교육의 이수율도 낮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강사가 부족한 실정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021. 7. 27부터 시행)에 의해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에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 2021. 7. 27.]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택배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대한 효과분석이 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방법은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 안전보건공단에서 인터넷 원격교육(무료)을 실시

·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이수

- 그러나 사업장 자체 교육은 17%에 불과하고 안전보건공단의 무료 인터넷 원격교육은 형식적으로 이수하는 경향이 높고 교육에 대한 효과도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 연구되어야 함.
- 택배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좀 더 실효성있는 교육방법을 강구해야 함. **건설업 기초 안전교육처럼 전문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토록 교육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설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발생율이 높은 택배기사, 쿼서비스, 건설기계운전자의 경우에는 최초 노무 제공시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수.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도입 배경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건설현장마다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학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정보와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함.

※ 2012년 6월부터 법적 의무사항으로 적용하고 시행.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2조의2·제32조의3
-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13, 시행규칙 제37조의2~5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부터 13조의7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교육이므로 교육에 따른 소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함.
- 도급업체는 법 제29조제2항3호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발생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어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됨)을 할 수 있음.

○ 교육대상

-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 교육시간 및 내용

- 4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외 3과목)

○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및 이수증

 <p>01 교육신청 사업주</p>	 <p>02 교육접수 교육기관</p>	 <p>03 교육실시 교육기관</p>	 <p>04 이수증발급 교육기관</p>	 <p>05 결과전산입력 교육기관</p>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3. 택배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개선 방안

□ 택배기사의 최초 노무제공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의 현실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교육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2시간이상)은 교육시간과 내용을 고려하고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안전보건교육 시간의 확대가 필요함.
-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교육효과를 고려할 때 법에서 정한 채용시 필요한 14개 항목의 교육내용을 택배종사자에게 전달하려면 교육시간이 6시간이상으로 확대가 필요함.

◇ 산안법에 의한 채용시 교육 및 교육내용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10항목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이상	4개 항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2시간이상	14개 항목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택배근로자에 대한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교육(안)
 - 6시간이상 실시 할 경우 교과편성 예

구 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중 택배기사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시간이상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1시간이상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시간이상
	작업개시전 점검 및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1시간이상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시간이상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1시간이상

- 최초 노무 제공시 안전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시행할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운전자에게

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최초 노무 제공시 전문교육기관 활용 방안

-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교육장, 장비, 시설 등 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고, 실시한다 해도 법에서 규정한 시간을 실시하지도 않고 형식적이며 관련 근거만 비치하는 경우가 많음.
-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원격교육(무료)은 교육생이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와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재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처럼 의무적으로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이수 할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킥서비스기사, 건설기계운전자, 택배기사는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전문교육기관에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이수할 경우 비용은 산안법 제77조③항에 근거하여 재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③항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방법의 다양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사고가 집중하여 발생하는 직종인 킥서비스, 건설

기계운전자(27종), 택배기사 등은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전문교육기관에서 직종별로 과정을 개설하고

-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을 집체교육으로 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방법을 다양화해서 교육 편리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집체교육(6시간)
 - 원격(2시간) + 집체교육(4시간)

- 이론보다 실제 상황을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의 개발 : 퀵서비스, 건설기계운전자, 택배종사근로자에 대한 VR, AR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 위주 교육과정 편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여태동 (CJ대한통운 전국택배대리점연합 재무국장)

<6월 17일 소모임 포럼 추가 의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택배원/퀵서비스 등의 안전보건교육에 실효성에 대한 현장실무적 방향
 1.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강화 - 택배원/퀵서비스 해당 업종에 위탁계약전 사전 자격증제도화
 - 운전면허증/화물운송자격증 등과 같이 해당 업종에 필수 자격증 또는 수료증(2년갱신제도) 필요 -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플랫폼사업의 위탁계약(개인사업자)으로 주체적 종사자로서 업무특성상 실제업무현장의 이해도와 숙련도에 따라 업무처리형태가 다르며, 종사자 또한 프리랜서개념의 자율적인 부분과 이해관계가 맞아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근로자와 달리 업의 특수성으로 수익의 규모를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고 비대면배송 등의 서비스로 국민편의서비스로 변해가는 산업으로 주체적 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가 많으며 전체적인 산업의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 자격증 또는 수료증으로 동종업종/타지역에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사자의 선택권이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가졌을 때 한단계 더 성숙한 산업으로 발전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체적 종사자로서 해당산업의 기본적 소양(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또는 수료교육은 5~6시간 정도가 좋을듯합니다.
 -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위탁사업을 시작하면 해당 플랫폼사업자 또는 영업점(대리점)관리자가 상시정기교육(연 4시간)으로 1년 4계절의 현장특수성을 고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드는 것이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교육 등의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사업자와 영업점(대리점)은 현장 산업안전보건예방과 현장개선 등의 실질적 관리업무에 중점을 두고

운영 및 산업의 발전에 서로가 기여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플랫폼사업자 또는 영업점(대리점) 관리자의 직무교육자격증/수료증 교육제도를 정부 또는 플랫폼사업자들이 지원하고 육성하여 사업장의 올바른 실질적 산업안전보건교육,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영업점(대리점)관리자는 현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효율과 현장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의무를 부여하면 교육의 실효성 또한 높일 수 있는 방법).
3. 추가적으로 택배원/퀵서비스 종사자는 업무자체가 복합적인 업무입니다. 상품의 적재, 운반, 배송 등의 업무와 차량운행, 관리업무, 고객응대 등의 서비스제공업무 등의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업무과부하(주체적기준으로 인한 업무과부하)로 인한 현장사고 등의 발생율이 매우 높음으로 특수형태종사자보호의 관리감독의 적정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상 문제점

권혁정 (CJ대한통운 전국택배대리점연합 노무팀장)

<6월 17일 소모임 포럼 추가 의견>

1. 교육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 제77조) 시행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는 특고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20.01.16일 이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실시 내용

(1)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

○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이수

- 2020.1.16일 이후 신규입사자(택배원)는 택배대리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특고자(택배원)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2시간 이수하고 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일자 기준으로 계약전 교육이 필수(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 교육수료)

○ 특별교육(안전교육)

- 최초 교육은 총 16시간 중에 첫 1회는 4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나누어 교육하면 된다.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이상 교육)

※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은 먼저 특고자가 수행할 작업장 여건이 특별교육대상 작업장(화물자동차, 지게차등으로 운반용 등 하역기계가 총 5대 이상인 경우, 이경우 특고자와 사업장이 보유한 운반용 등 하역기계수를 합산하여 5대인 경우 포함)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고용부산업보건과-1496(20.3.31)회신

- ※ 따라서 특별교육대상으로 확인 시는 16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2호 가목 요건 해당시 100분의 50 단축하므로 8시간 교육)교육 진행가능

(2) 최초노무제공시 필수교육 내용

- 교통안전 및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기존 동종업계 6개월이상 근무자(증명자료필수)는 인터넷교육/특별안전 교육시간이 1/2로 면제됩니다.

(계약전 인터넷교육을 추천/ 해마다 교육수료사항 아님)

(3) 정기안전교육은 특고자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교육을 자율실시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입직후 특별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을 16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이중 첫교육시간 4시간이상을 실시하고 이후 12시간은 입사일자로 3개월이내 나누어 교육을 완료 해야한다.

(2020.1.16일 이후 신규 SM입사자는 총 16시간을 근무하는 동안 1회만 받으면 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관련 『별표 4』3항 나호에 의거 특별교육 대상의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16시간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2시간)은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그러나 특별교육 16시간 중 인터넷 교육 2시간은 이수 가능하나 잔여 교육시간에 대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강사요건 및 교재를 갖추고 집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 자체교육 진행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나 고용부 지정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서는 특고자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동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2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소모임 토론정리

기록: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

김범준 전무 통합물류협회

택배현장의 시설점검을 고용노동부가 하지만, 생활물류법에 따르면 영업소에서 택배기사를 안전보건교육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리업주가 고민하는 내용을 공유해서 교육커리큘럼을 만들고 강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택배기사의 교육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져야 한다. 택배기사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을 이야기해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교육 이수한 후에 이수증(교육확인증)을 가지고 택배사업에 진입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산안법으로 정해진 택배원 교육대상자는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택배업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용부 질의회신). 교육대상을 1만명으로 보고 있으며, 매년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4000명-5000명, 나가는 사람이 연간 5000명이다 (배차 넘버로 산출을 해보니). 또한 다른 회사로 가는 경우도 많다 (연간 2000명).

그리고 법 시행 이후부터 택배 업무에 진입한 택배원만을 교육대상자로 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교육의 기회가 없었으므로 교육을 (최소한 한번은) 받을 필요가 있다.

택배기사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 집체교육도 어렵지만 강사가 지역으로 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한산업안전협회나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전국에 교육장이 다 있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역적으로 몰리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국적인 교육망을 가진 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

기초교육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6개월이나 분기별로 집체교육을 시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되려면 산안법 상의 교육 내용을 다루어야 하지만, 택배기사에게 모두 필요한 내용인지가 의문시된다. 과로사 예방에 대한 건강관리내용이나 일의 프로세스를 보았을 때, 엘리베이터사용시 주의사항, 계단의 주의사항 등을 다루어야 한다. 특고종사자가 개인별로 일하는 형태와 경험치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택배기사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므로 교육 내용도 논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택배기사로 입문하고 6개월까지가 일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 2-3개월 내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송장 신경 쓰고 잘못 배송하고, 불평 클레임에 대한 고민이 발생한

다. 반복적인 업무를 진행하는데 다양한 직무교육을 받기보다는, 교육내용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자 휴식 시간에 동영상으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필요한 교육을 모아서 의미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물류현장에서 일용직을 많이 사용한다. 매일매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켜야 한다. 어제 왔을 때 교육을 시켰는데, 오늘도 다시 설명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매일 계속 반복적으로 한 시간씩 해야 하는지에 의문이다. 단순 교육하면서 물류현장의 일용직을 교육하는데, 건설기초처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물류 현장에서 안전기초과정을 작업하는 교육받아야 한다.

교육신청 자체를 사업장에서 해야 한다. A라는 물류기초교육기관이 있으면 특수교육은 사업주가 해야 한다.

국토부의 교통안전교육도 (용달이던 트럭이던 화물차건 운송수단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운송사도 다 와 있다, 물론 택배기사도 와 있다) 자동차 운전관련 교육만 진행한다.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 기사님들이 다시 교육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집체교육이나 인터넷교육보다는 필요한 콘텐츠를 수시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택배기사가 안전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직업군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문교육기관과 협력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특고에 대한 산안교육이 시행된다. 고용부가 특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작년 10월에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여 과태료를 내기도 하였다. 현장에서 교육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선제적인 방법이나 특고나 택배기사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없는 상태이다. 근로감독관이 와서 본인도 잘 모르면서 시정조치를 정확하게 내리지 못한다.

교육은 최초노무제공이 2시간이고, 택배차량/화물운반기가 5대 이상이면 16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다. 대부분 택배대리점이 5대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교육은 되는데, 집체교육을 할 때 영업장 대표가 3년 이상이면 강사자격이 주어진다. 위탁교육기관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해도 과정이 없다. 법령이 명시되어 교육종류와 과정이 있어도 (산안법 별표) 교육을 시행할 상황이 아니다.

대리점이 있는 특고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신규자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인프라가 해결되어야 한다. CJ대한통운의 교육실태를 조사하려고 해도, 대리점주는 택배기사의 파업으로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대부분 택배기사는 2시간은 인터넷으로 교육받고, 나머지 시간은 8시간만 받기도 하고, 4시간을 받고 3개월 내에 받는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리점주 3년 이상의 경험을 가능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최초노무시 교육을 진행하였다. 정기교육은 특고여서 할 필요가 없고 최초의 교육만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초에 한번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안전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과는 다르게, 택배 특고직이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고 인수인계도 있지만, 입사 전에 교육을 받고 와야 한다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 택배를 하려면 차를 구매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한다. 입사 후에 증빙자료로 가능하다. 입사 전에는 교육이 가능하지 않다. 준비 기간에서 외부 기관에서 이수하고 오라고 할 수도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2시간 교육도 이수하고 첨부해서 입사하는 방식으로 CJ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도 없고 현장과의 괴리감도 있다. 정확하게 매칭할 필요가 있다.

업무를 위한 소양자격증은 갖추어야 해서, 사업주의 부담이기보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습득해서 최초노무제공 시 이수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대리점주는 동의한다. 상시교육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정규교육을 생물법으로 실시)는 대리점주가 관리를 해야 한다. 직무교육을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대리점주가 추가 책임이 생기지만 직무교육을 이수한) 대리점주가 현장과 택배기사를 잘 파악하고 교육 실효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다. 현장 업무지시의 공유를 위해서, 없는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택배대리점에서 작성한 안전보건자료집은 직무교육자체가 없으니,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자료를 넘겨주고, 택배기사가 정말 특수한 사례이다가 보니, 법적인 제도와 행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택배기사들도 안전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개념이 없고 정립도 되어 있지 않다.

특고로 적용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대리점주가 위탁기사 5명 이상 인지도 논의가 된다. 5인 이하 사용 대리점주는 고용노동부의 업무점검에서 빠진다. 택배기사는 근로자도 아닌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산안법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특고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해소되면(특고와 근로자수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 교육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생물법시행으로, 특고의 산안교육에 대해 사회협상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정확한 업무지시나 기준도 없이 현장에서 와서 택배기사의 5인 이상이면 문제가 된다(감독의 대상이 된다). 현장에서 법적 제도도 결정이 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특고 교육 내용도 찾아보는데, 일반적으로 교육내용은 좋다.

택배기사는 6개월 이상이 되면 전문가가 된다. 처음에 강화된 교육을 받고,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짧은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직무교육체계도 관리자에게 3개월 이상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시간을 단축해서 일년내내 상시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겨울에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한다. 계절의 특성이 있다. 프로그램도 짜고 정확한 기준으로 현장에 배포해야 안전관리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료하게 된다.

차량안전조치를 통해 관리자가 차량관리를 하라고 (고용노동부 감독권은 이야기)하

는데, 택배기사의 차량은 회사 차가 아니다. 대리점주가 정리해서 관리하라고 한다. 직무스트레스도 모두 다 기록으로 남기라고 감독관은 이야기한다. 현실적으로 감독관이 이야기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한 것으로 상담을 했다고 적는다.

택배기사를 타의적으로 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고 자의적인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택배기사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기본관리는 필요하다. 노무 소양을 가지고 수료해야 가야 한다. 배치 전에는 교육을 해야 한다. 사업주가 해야 할지, 본인이 해야 하는 문제는 남는다.

집체교육을 하는 것은 효과가 가장 좋다. 최초노무시 교육에 대해서 이수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 필요하다. 택배사나 대리점주의 권한이 있어서, 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실효성이 지켜져야 한다.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택배기사 중에는 한 두달 안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 교육비용부담주체는 법으로 논란이 있지만, 생물법상으로 영업소에서 하고 있다. 대리점주도 3년 이상 했다고 자격을 받지만, 교육시킬 능력과 자질도 적다.

택배기사도 7월부터 고용보험료도 받고 산재보험도 적용받으니, 사고가 안 나게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업무스킬교육으로 한두 달 내에 교육시키는 것도 택배기사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산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4시간 교육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최초노무시 2시간 대신 4시간을 해야 한다. 입사 전에 해야 한다.

분류가 택배기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분류시간이 자유로워지면, 출퇴근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직무교육을 할 강사이면 사업주가 하기는 어렵다. 12시에 배달을 나가야 한다.

고택진 사무국장 (전국한진택배대리점협회)

2021년 5월에 협회가 설립되어, 아직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생물법이 시작되면서 사단법인으로 단일 협회를 준비 중이다. 사업자를 대표하는 통합물류협회, 특고직의 민주노총의 사이에서, 대리점 업주는 중간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국토교통부의 잠재적인 인가를 받고 단일 협회를 만들려고 한다.

화물운송협회의 교육이 특화되어서 특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협회가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특고에 대한 논의도 가장 많은 현안이 택배기사들에 대한 내용이다. 택배기사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기관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의 안전 자체가 처음 상정되어서, 처음부터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자 한다.

김정기사무국장, 오염석 상임부회장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롯데택배는 분류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2020년 10월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와서

안전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보완조치를 진행하였다. 다만, 상하차할 때 헬멧을 쓰라고 하는 현실과 괴리된 지적을 하고 갔다, 이제 교육에 막 신경을 쓰려고 한다.

안전보건공단 신용학 차장

업종의 특성의 고려해서 특고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인터넷으로 교육 방향을 잡았다.

건설교육기관처럼 비용부담은 사업주에서 진행하면서 하자는 의도이다. 사업주가 부담하고 건설현장의 근로자는 교육을 받고 현장에 들어가는 형태이지만, 애초 의도와 다르게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한 본질이 흐려진 경우도 발생한다. 근로자가 자비로 교육을 받고 현장에 들어가는 형태가 된 것이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택배업에 들어가는 근로자가 교육비용 지불 부담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산안법의 조치 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조치 및 교육의 의무를 하라고 한다.

일용직과 정규 고용의 차이로 발생한다. 오늘 일용직이 일하는데 사업주의 돈이 교육에 들어가고, 며칠 있다가 다른 곳에서 가서 일하면 며칠 전에 받은 교육이 필요 없어진다. 정부가 지원해주면 도움이 되지만, 누구든지 일용직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가 사업주인지의 종속성에 너무 매달린다. 어디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고 교육의 종류와 시간에 대해서는, 특고는 4시간에 4가지 교육을 맞춘 것이다. 직업병, 산안법상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교육내용의 가지 수가 많다고 교육 시간을 더 하라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충실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산안교육 자체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의 1호-6호 등으로 적용제외가 많다. 특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특고에 대한 산안교육이 부각되었는데, 채용시 교육(8시간)과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위탁계약을 받은 자만 교육대상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이지만 기존에 하던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므로 실은 특고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수입과 당장 연결되어 작업 중에 교육을 받기 어렵다. 미리 교육받고 택배업에 종사해야 한다. 채용 중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교육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도 최초노무교육 시에만 실시되도록 되어 있다. 특고의 근로자 개념 자체가 노무 제공받는자, 즉 사업주에 있다. 근로자로 책임이 넘어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공단의 인터넷 원격교육도 무료여서 논란에서 벗어나고 있다(누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유료교육으로 진행하면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된다. 건설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택배기사의 특고교육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적용해야 한다.

특별안전교육은 적용제외가 없다.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키도록 한다. 16시간을 해야 하지만 2일 동안 교육만 하라는 불만이 있어서 4시간 먼저하고 12시간

은 나누어서 하도록 하고 있다. 특고도 모두 해야 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박정숙 본부장

산안법과 생물법의 근거로 택배원에 대한 교육의 의무가 주어졌고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인터넷으로 특고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교육내용은 2시간으로 14가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시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특별교육(16시간) 중 공통 내용으로서의 채용시교육은 8시간이상 하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의 내용은 더 많다는 의미이다. 향후에 시간의 조절이 필요하다.

택배원뿐 아니라 대리점주나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 작업관련 위험 예방과 업무상 질병 예방에 대한 관리방안은 공유되어야 한다.

교육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민간교육기관은 교육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확보되어야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수강생도 충분하고 강사비 지급 등 운영을 해야 하지만, 현재로는 충분히 이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다.

면제조항에 대한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일단 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특고종사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에 적용할 활용도가 높은 교육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비도 현실화되고, 근무시간에 교육 지원이 있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교육환경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대리점업주 단체와 협약해서,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신현주 본부장

특고의 산업재해는 퀵서비스, 건설기계운전자, 택배기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택배기사의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잡은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분석해본다.

교육형태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의 검토가 필요하다. 택배기사의 업무는 14개 과목이 대부분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지역의 택배기사에게 실제 채용시 교육을 받은 지를 문의하니, 거의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별도로 산안교육을 받기에는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모여서 간헐적으로 업무전달하면서 안전교육을 하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법이 정한 시간과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점검에 대한 문서 작성 정도이다.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택배사나 영업점이 교육장, 시설, 장비, 강사 등이 없고 집합교육이 어려운 현실이다.

택배회사 관리자나 영업점주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 자체로 하거나,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어렵다. 현실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원격교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2012년 6월부터 법적 의무사항으로 적용)과 같이 미리 교육하고 사업장에 배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육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이수증으로 최초 노무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4개 과목에 대해서는 최소 6시간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채용시 교육시 10개 항목이 8시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4개항목에 4시간, 특고교육을 6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통상 채용 시의 교육은 8시간인데, 특고는 일용직으로 보기에 어렵고, 일용직 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특고는 8시간의 교육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안법을 전달해서, 환경적인 여건이 있을 때 택배기사가 대응하도록 포괄적인 교육을 시킨다. 2시간의 교육에 휴식시간이 들어가면 거의 교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원격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교육생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원격교육을 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한다.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재원에 대한 지원방안은 정부가 할 수 있다(산안법 77조3항).

집체교육 6시간으로 하지만, 원격 2시간+집체교육 4시간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교육은 잘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교육의 특성은 꾸준히 보고, 실습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진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현재까지 집체교육보다 좋은 것은 없다. 택배기사를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기관에서 교육시키면 된다. 집체교육이 효과가 가장 높아서, 배치전에 유도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